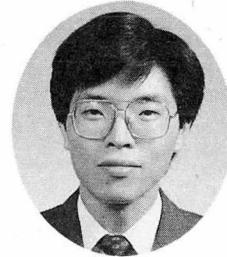


축산관련 융자금 신청요령과 결정 · 지급절차



어 인 철 대리
(축협 여신관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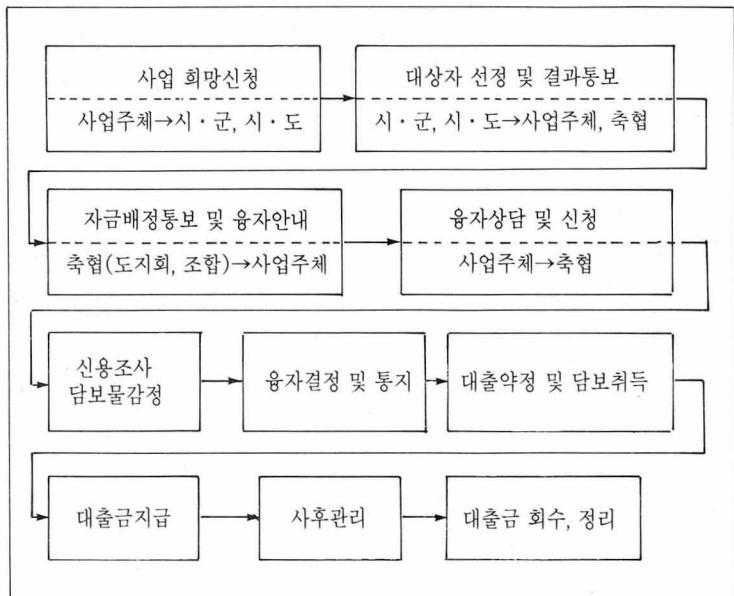
현행 축산관련자금의 융자는 정부의 축산정책목표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저리로 우대지원하는 정책 자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복잡 단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와 융자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정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축협의 융자절차를 정리, 표준화 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1. 사업 희망신청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에 따라, 신청방법 및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축가자



〈그림1〉 융자절차 흐름도

율사업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등)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청에서,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중앙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서류는 해당 신청기관에 별도 비치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도록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95년도 사업의

경우 당초 '94. 8. 31까지로 정하였지만 신청물량에 미달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자금이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참여 희망자는 우선 사업참여 여부를 해당지역 시·군청이나 도청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2. 융자신청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축협은 융자대상자에게 자금배정 결과통보 및 융자안내를 하게 되며, 통보받은 융자대상자는 융자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융자서류를 융자신청서와 융자실행시의 2단계로 구분하여 제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일괄제출도 가능)받고 있는데, 융자신청시에는 신용조사서류, 담보물 감정 서류, 융자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융자실행시에는 채권보전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융자신청 및 융자실행시 제

출하여야 할 서류는 개인 및 업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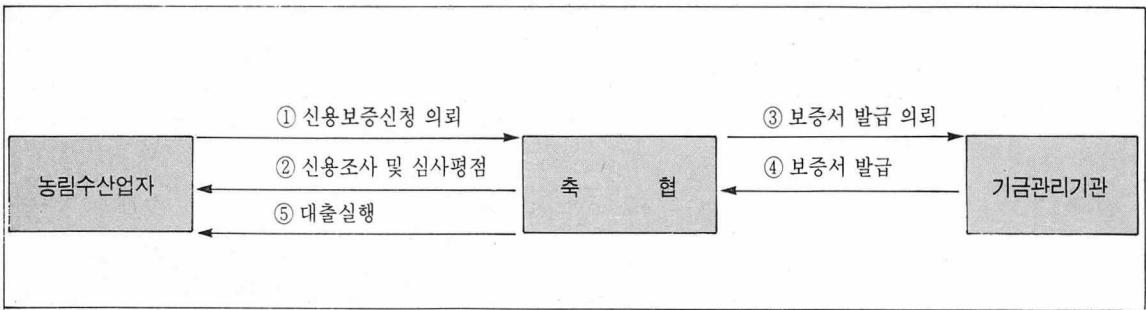
3. 융자결정

축산관련자금의 융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이 정책자금으로서 대상자나 금액, 조건 등이 행정기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사무소는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제한사항(연체대출금 보유여부,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등록유무)이 없고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융자를 결정하게 된다.

4. 대출실행

<표 1> 융자신청 및 융자실행시 기본적인 제출서류

구 분	기 본 서 류	개인(양축가)		법 인	
		신용	담보	신용	담보
융자신청시	◦ 융자상담 및 신청서(소정서식)	○	○	○	○
	◦ 총회 또는 이사회 차입 결의서			○	○
	◦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	○
신용조사시	◦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	○
	◦ 최근 2기간 결산 재무제표			○	○
	◦ 최근 월말 합계 잔액시산표			○	○
담 보 물 감 정 시	◦ 담보물건(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
	◦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	○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증명서			○	○
융자실행시	◦ 주민등록증사본	○	○	○	○
	◦ 인감증명서			○	○
	◦ 등기권리증			○	○



<그림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절차

융자결정이 나면 대출사무소는 해당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채권보전의 대표적인 수단이 담보제도이다.

주요 담보물건별 대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대출

축산정책자금의 경우 1천만원(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은 별도)까지 신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이상(대개 재산세 납부액 기준)의 자격을 가진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동산 담보대출

가장 일반적인 대출제도로서 대표적인 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전·답, 목장 용지 등이 있으며, 대출실행시 대출사무소와 담보제공자간의 저당

권 설정계약을 맺고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시 적용하는 담보취득비율은 감정가격의 100%내에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물로서의 가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80% 정도를 적용하고 있다. 창고나 축사 등의 경우에는 만기시 환기성을 감안하여 이보다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거나 취득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양축가, 영농조합법인 등)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하는 제도로 절차는 <그림2>와 같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용조사 및 심사평점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개인은 최고 2억

원, 영농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정책자금 융자시에는 심사평점에서 우대를 하고 있다.

5. 대출금 지급

축산관련 정책자금의 용도는 대부분이 시설자금으로서 일단 배정된 금액이 전액 대출 실행되었다고 하여도 실제 대출금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사업진척도는 시·군(시·도)의 축산관련 담당공무원이 현지답사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 ■